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

제정일자	Established	2025. 5.
최종개정일자	2025. 5.	-
개정번호	Rev. No.	-

제.개정이력

[illegible]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코오롱ENP (이하 “회사”라 한다)는 책임 있는 조달 활동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협력사와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기반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를 예방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 2 장 구매윤리

제3조 (일반) 회사는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내부 기준을 준거로 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업체와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한다.

제4조 (공정한 기회 제공)

회사는 입찰 거래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모든 공급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제5조 (대등한 조건 협의)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 조건 및 절차를 충분히 협의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제6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회사는 협력사와의 계약, 거래 활동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모든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력사 또한 모든 거래행위에 있어 관련 행동강령이나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제7조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회사는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금품·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협력사로부터의 선물이나 접대는 업무 관련성, 법적 기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타당해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매 부서 등 관련 부서는 일체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며 협력사에도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8조 (분쟁 광물 사용 금지)

회사는 분쟁지역에서 생산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분쟁광물이 포함된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분쟁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확보 및 관리한다.

제9조 (지속가능한 구매)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구매 활동을 통해 회사 제품의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경영 실천을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에서의 원부자재 구매 활동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 소모성 자재를 비롯하여 전사적 구매 업무에서 지속가능한 구매를 실천한다. 지속가능한 구매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협력사 실천 권고)

모든 공급업체 및 협력사는 계약 체결 시 '코오롱ENP 협력사 행동규범' 협약을 맺고 당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 방향성 및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제 3 장 지속가능한 공급망 평가

제11조(일반)

주요 공급업체 및 협력사 선정 시 공정한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재무 및 비재무 전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는 근로자 인권 존중, 안전한 작업환경,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기업 윤리 준수, 경영 시스템 등에 대하여 평가 시에 반영한다. 평가 이후에도 환경 및 사회 관련 법규 위반, 체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리스크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공급망 ESG 평가는 다음의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12조(근로자 인권 존중)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계약직,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인턴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13조(안전한 작업환경)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하위 협력사와 협업하여 잠재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14조(사업장 환경 영향 관리)

협력사는 모든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협력사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기업 윤리 준수)

협력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경영의 실천 및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16조(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본 정책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해 자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4 장 실행 방안

제17조(거버넌스)

회사는 지속가능한 조달 이행을 위해 구매팀을 주관부서로 지정하며, 주관부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고 중대한 이슈 발생 시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제18조(리스크 평가)

회사는 신규 및 기존 협력사에 공식 행동규범을 제공하며, 협력사는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행 서약서 또는 동의서 제출을 통해 정책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에 ESG 요소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제19조(모니터링)

회사는 협력사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실사,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거래 제한 및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하여 공급망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제20조(협력사 지원)

회사는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 ESG 컨설팅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ESG 성과가 우수한 협력사에는 추가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망 전반의 ESG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별표 1] 지속가능한 구매 정의

지속가능한 제품이란 아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주요 제품	해설
환경 표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관련 규칙에 의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저탄소 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에너지 효율 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관련 규칙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제품, 에너지 절약 마크 인증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칙에 의한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
기타 환경관련 인증 제품	국내 및 해외 인증기관(공인/민간)의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